KOSHA GUIDE

C - 96 - 2014

##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.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(설계변경의 요청)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,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공사계약내용 중에서 가설구 조물과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설계변경 함에 적용한다. 다만,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일 괄·대안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도급인"이라 함은 해당공사와 관련된 설계서를 제공하고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.
- (나) "수급인"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.
- (다) "설계서"라 함은 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.
- (라) "물량내역서"라 함은 해당공사의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(재료, 설비 등) 또는 비목과 그에 해당되는 규격·단위·수량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.